

제1장

국제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최기재

제1절 서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기본 정보는 「전국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 조사단위인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뜻한다고 조사지침서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업체'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동일 자급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를 뜻하며 분사와 산하 사업체(지사, 공장, 영업소, 창고 등)를 포괄하는 단위를 말한다.

OECD의 '사업체(Establishment)' 정의(EUROSTAT-OECD, 2007)는 지역단위(Local Unit)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역단위는 지리적으로 식별된 장소에 위치하는 기업 혹은 기업의 부분 즉, 작업장·공장·도매상점·사무실·광산·창고 등으로 한 명 이상의 종사자가 경제활동을 한 곳을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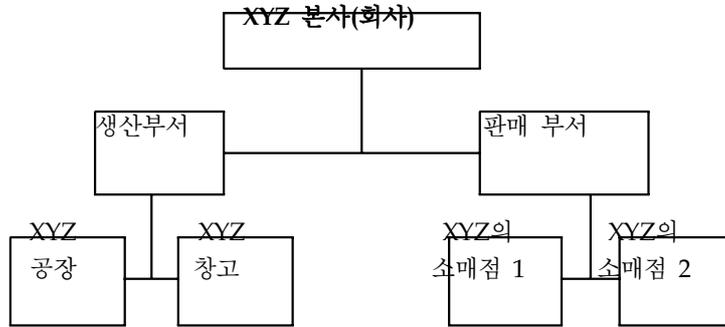
미국의 '사업체(Establishment)' 정의(SBA, 2008)는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 또는 산업 활동을 하는 하나의 물리적 장소를 뜻한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사(Firm)¹⁾ 또는 기업(Enterprise)²⁾ 또는 회사(Company)³⁾의 부분단위를 칭한다. 즉, 공장, 창

상사란 동일한 주에서 동일 산업을 하는 공동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1) '기업(Firm)'이란 국내(State) 공동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2) ' (Enterprise)'

고, 소매점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들 각각을 개별적인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회사단위가 아닌 사업체단위로 조사·보고되고 있다. 한편, 경제센서스 대신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장소적 개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 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경제센서스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사업장)에 따라 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공간단위의 산업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개체단위는 크게 '사업체'와 '기업체'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산업통계를 조사방법으로만 생산하는 경우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해야 장소적 개념이 포함된 기업의 '부분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각 산업 활동 영위업체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와 각종 세금관련 신고 자료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체' 단위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업체' 단위로 활용 가능하다. '사업체' 단위의 통계 생산에서는 '기업체' 단위로 생산된 통계를 기업부분의 물리적 장소로 쪼개 단위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업체' 단위를 '사업체' 단위로 쪼갤 수 없다면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시스템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활동도 급변하고 있다. 물자 생산·유통의 글로벌화, 산업 활동의 정보기술(IT)화, 서비스를 겸한 제조 활동과 여러 업종을 한꺼번에 하는 겸업화 등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회사—————란 공동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3) ‘ (Company)’

시스템 근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산업 활동의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체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먼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한 부문과 불가능한 부문이 얼마나 되며, 불가능한 부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새로운 방식을 주축으로 하고 기존방식으로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방식을 취하거나 주축으로 할 경우에는 새 방식을 개발·적용·검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관 극복과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 공유를 통한 각종 행정자료 활용 및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사항목은 경제센서스로 해결하는 추세지만, 이 시대 새로운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새로운 통계 생산체계로의 정착은 아직까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의 주도 아래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은 선진국 사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국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통계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기업 활동 조사」 등 ‘기업체’ 단위 본사조사를 확대하고, 부분단위인 ‘사업체’ 단위 지역개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센서스」를 준비하고, 타 업종 간 합동 조사 등 ‘기업체’ 및 ‘사업체’ 조사에서 각각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대상·시기 등 전반적인 조사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셋째, 조사의 근간인 모집단의 정확성 제고와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 최적의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과제는 통계청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사업체 모집단 DB에 대한 일종의 보완 정보로서 국세자료인 사업자등록 신고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선행과제이다. 효과적으로 산업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을 발굴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려는 추진의지가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본 과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 및 기

업체 모집단 DB 구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국세자료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자료와 휴·폐업 신고 자료를 사업체 및 기업체 모집단 명부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등과 관련 자료 활용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 결론에서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DB와 함께 국세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장·단점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모집단 DB 구축 현황

1. 사업체 모집단

사업체 모집단이란 1장에서 설명한 '사업체'를 기본단위(Elementary Unit) 또는 관찰단위(Observational Unit)로 한 모든 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기본단위'는 통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상이 되는 최소 단위이며, '관찰단위'라고도 한다.

모집단은 크게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목표 모집단이란 연구 목적에 따라 현실을 뛰어 넘어 공간적 또는 시간적 개념 등을 포함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정의된 모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목표 모집단의 전체 포괄범위를 실제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가능한 범위로 대부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조사 가능한 기본 단위로만 구성된 모집단을 조사 모집단이라고 한다.

사업체 부문의 '목표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사업체'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단위의 집합이며, '조사 모집단'은 조사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본단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에 차이가 미미할 때는 조사 모집단을 목표 모집단으로 해석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상당한 특성 및 양의 차이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사 모집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목표 모집단과 범위가 같도록 조사가 가능 영역을 넓혀야 한다.

사업체 모집단은 모든 산업의 조사 기본단위로서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 모집단이 부실하면 센서스는 물론, 각 업종별 표본조사에서 기초가 부실한 조사 모집단 명부로 인해 표본추출, 조사 및 집계 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와는 다른 조사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업체 모집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사업체통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체 관련 통계를 연계하여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는 1999~2007년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은 2006~7년 자료, 「건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등은 2007년 자료를 사업체고유번호를 연결고리로 하여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2008년 9월 23일) 기준으로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사업체 수는 약 810만개(2006년 기준)이며, 과거폐업, 대상이외 자료 등 누적관리로 매년 6~70만 개씩 늘고 있다(상세자료 <부표 1> 참조).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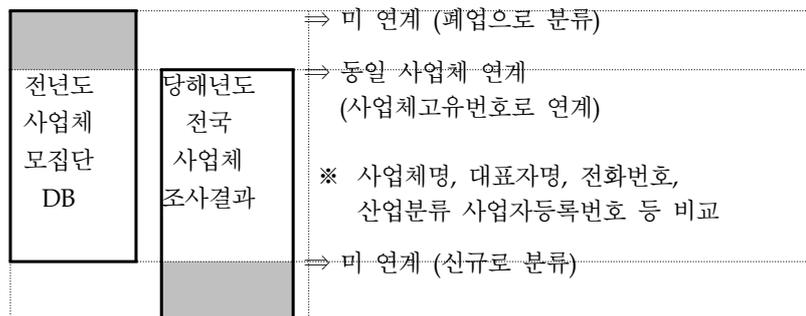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사업체수(개)	3,016,173	3,650,230	4,553,746	5,538,865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체수(개)	6,150,830	6,760,975	7,514,418	8,109,742

각종 사업체단위의 통계조사와 과거 시계열 자료 연계 등을 위하여 모든 사업체에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해 상호 연결하고 있다. 연결고리로 활용되는 사업체고유번호(10자리)는 시도(2자리), 조사실시연도(2자리), 사업체 일련번호(6자리)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
시도행정구역	조사실시연도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 모집단 DB를 사업체고유번호로 연계할 때에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

인하여 일치하는 사업체는 동일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체 모집단 DB와 불일치하는 사업체는 폐업으로 분류하고, 금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불일치하는 사업체는 신규로 분류한다.



현 사업체 모집단 DB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등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연계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체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유형별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개별사업체의 과거이력 확인 및 수준분석이다. 예를 들어 개별 사업체인 XX주유소의 과거자료를 조회하면 사업체명 변경(XXXX주유소 ⇒ XX주유소), 대표자명 변경(허XX ⇒ 이XX), 종사자 수, 산업분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간 비교분석이다. 예를 들어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의 대상 사업체인 XX자동차(주) XX공장의 사업체고유번호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인해 대표자명, 전화번호, 종사자 수, 산업분류 등 조사항목을 비교·검토해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통계조사 간 산업분류가 오류인 경우 해당 사업체 산업분류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며, 네 번째 유형은 배타적인 개별 업종 통계조사 간 중복조사의 확인이다. 예를 들면 「광업·제조업조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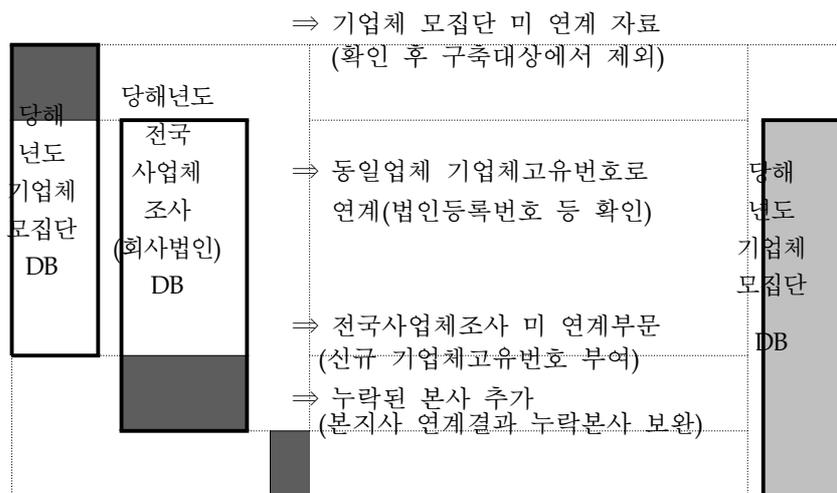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에 중복된 사업체고유번호가 있다면 중복조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업체 모집단

기업체 모집단이란 ‘기업체’를 기본단위로 한 모든 단위의 집합을 뜻하지만, 사업체 모집단과 구분을 위해 통계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상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에 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업체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목적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모집단 관리를 통하여 기업체 단위의 모집단 명부를 가능한 제때 제대로 제공하여 개별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결과자료의 질과 조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방법은 전년도 기업체 DB 모집단에 금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회사법인 사업체를 연계조건에 따라 연계하여 기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독사업체는 단일 기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단독 기업체단위를 생성하고, 2개 이상 다사업체로 된 기업은 본사와 지사에 동일한 기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다사업체 기업체단위를 생성한다.



기업체 모집단 DB와 연계되지 않은 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조사결과 검토, 행정자료 검색, 전화질의 등으로 확인하여도 연계되지 않으면 구축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가 미 연계된 부문은 사업체 구분이 단독 또는 본사이면 신규 기업체로 분류해 신규 기업체고유번호를 주고, 사업체 구분이 지사이면 행정자료, 전화질의 등으로 확인하여 누락된 본사를 추가하여 연계시키고, 본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단독 기업체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체 구분을 수정한다.

DB 구축결과 점검 및 자료 보완은 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산업분류, 행정구역, 기업구분 등을 점검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자료,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터넷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매출액,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조사」, 「기업 활동 실태조사」 등 개별 통계조사의 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 결과자료를 이용한 내용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구축 항목은 기업체고유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행정 구역, 전화번호, 창설연월, 자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기업 산업분류 등 66개 항목이다(상세자료 <부표 2> 참조).

기업체 DB 구축의 사전 작업으로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의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 항목을 다시 한 번 내용 검토하여 '기업체' DB 구축 대상 사업체를 정확히 추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체' 대상 판단 자료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자료,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터넷 자료, 해당 업체와의 전화질의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가분 등을 비교하여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 조사항목을 점검·보완한 후 「전국사업체조사」 담당부서에 제공하여 수정·반영토록 하고 있다. 2008년도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사전 작업의 현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조직형태의 코드부여 현황〉

조직형태코드	1	2	3	4	5
코드명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단체

〈사업체 조직형태의 내용검토 후 수정 내역〉

내검 사업체수	조직형태 수정 사업체수	조직형태 수정 내역			사업체 구분 수정 사업체수	법인 등록번호 수정 사업체수
		2→1,3,4,5	1,3,4,5→2	1,3,4,5→ 1,3,4,5		
24,723	3,891	908	2,972	11	169	2,832

기업체 DB 구축 작업과정 중 연계차수, 연계조건별 연계 사업체 수 및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체명 3가지 조건이 일치하는 연계 사업체 수는 총 313,116개 중 144,311개로 46.1%이다. 그리고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 기업체명(지사 중 본사명 포함), 창설연도 등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17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사업체 수는 272,276개이며, 누적 비율은 87.0%로 나타났다.

〈연계조건별 연계 사업체 수 및 누적 비율〉

연계 차수	연계 조건	연계 방법	연 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체명	전산	144,311	46.1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산	28,584	55.2
3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일반	21,866	62.2
4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일반	19,061	68.3
5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법인등록번호	일반	21,719	75.2
6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사업자등록번호	일반	4,284	76.6

7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대표자	일반	2,021	77.2
8	법인등록번호	일반	9,891	80.4
9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1,990	81.0
10	사업체명+행정구역코드 5자리 일치	일반	516	81.2
11	법인등록번호(모집단전체 비교)일치	일반	6,802	83.4
12	기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일치	검색	199	83.4
13	사업자등록번호(모집단전체 비교)일치	일반	363	83.6
14	기업체명, 행정구역 5자리 일치	검색	362	83.7
15	(단독, 본사) 변동2, 창설연도 7년 이상 사업체신규부여	전산	9,397	85.7
16	(단독, 본사)			
16	지사 중 본사명과 모집단 기업체명 일치	검색	462	86.8
17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사업체	검색	448	87.0
연계대상 사업체수 : 313,116 개			272,276	87.0

기업체 고유번호 연계 및 신규 부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 고유번호 연계 및 신규 부여 결과>

변동	1	2	본사 누락	합 계
(전국사업체조사)	(존속)	(신규)		
기업체 고유번호	244,602	27,674	-	272,276
전년 연계 사업체수				
기업체 고유번호	20,232	20,608	751	41,591
신규 부여 사업체수				

기업체 모집단 DB구축 작업 과정을 표로 살펴보면, 우선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서 회사법인만을 추출해 확정자료를 정하고, 확정자료의 내용 검토 등 수정 작업을 다시 한 후 구축한다.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체 대상 확정자료〉

구 분	총사업체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사업체수	3,315,524	2,802,771	314,076	102,558	96,119
(구성비)	100%	84.5%	9.5%	3.1%	2.9%

〈내용검토 등 수정작업 후 변동 내역〉

전국 사업체조사 회사법인	증 가		감 소	
	본사 누락 추가	조직형태수정 (회사이외법인 →회사법인)	중 복 사업체 제 외	조직형태수정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314,076	751	23	746	237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내역〉

확정 자료	수정작업 변동내역		연계대상 사업체수	본사누락 추가	기업체모집단 (2007년)
	조직형태 수정	중복제외			
314,076	214	746	313,116	751	313,867

〈기업체 모집단 DB의 사업체 종류별 내역〉

기업체수	기업체수		다사업체 지사
	단독기업	다사업체 본사	
313,867	193,652	24,471	95,744

기업체 모집단의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기업체 단위의 통계조사를 위한 모집단 제공과 기업단위 통계 작성·활용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SS)의 명부자료 등이며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모집단 명부자료 제공 내역〉

제 공 항 목	제공여부	비 고
- 기업체명	○	
- 대표자명	○	
- 소재지	○	
- 조직형태	○	통계작성기관에서
- 창설연월	○	통계조사 목적으로
- 기업체 구분	○	사용할 경우에만 제공
- 산업분류(소분류)	○	
- 상용종사자 수	○	
- 대표자 성별	○	

3. 조사통계 연계 활용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의 종합적인 구축·관리를 통해 관련 업체모집단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었다.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기업 활동실태조사」 등 통계청 조사통계의 모집단 명부를 모집단 DB와 연계하여 최신 자료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DB에 기 구축된 자료를 각종 개별 조사통계 결과의 내용검토 자료로도 이용하고 있다. 통계조사 간 동일 업체의 조사항목과 조사업체 비교·분석을 통해 오류·누락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상 업체의 누락·중복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모집단 DB와 개별 통계조사의 연계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별 조사통계 결과자료와 모집단 DB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 업체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동일 업체로 판정한 경우 사업체 모집단 DB의 사업체고유번호로 연계한다. 세 번째,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는 신규 사업체로 판정해 신규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모집단 DB와 개별 통계조사 연계작업 내역>

전년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 자료	당해년도 개별 통계조사 (사업체·기업체) 결과자료	⇒ 미 연계 (폐업으로 분류)
		⇒ 동일업체 연계 (DB 고유번호로 연계)
		⇒ 미 연계 (신규 고유번호 부여)

전년 모집단 DB 자료와 2007년 기준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의 연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 DB와 개별 통계조사 연계결과 내역>

사업체	전국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순수업	전문과학	기업
모집단	사업체	연계				기술업	활동
3,330,890	3,315,524	미 연계	5,268	6,952	2,005	993	269
		합계	92,786	115,018	6,736	11,309	10,749

2007년 기준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모집단 DB에 연계해 본 결과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한 조사표 개수는 다음과 같다.

<동일 사업체 조사한 조사표 개수 내역>

개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사업체수	3,117,562	205,459	7,835	33	1	3,330,890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한 세부적인 조사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일 사업체 조사한 조사표 세부 내역>

사업체 모집단DB	전국 사업체	광업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전문 과학기술	연구 개발	기업 활동	사업체 수	조사표 수
M	M	M	M		M	M	1	5
M	M	M	M			M	12	4
M	M	M	M				118	3
M	M	M			M	M	8	4
M	M	M			M		36	3
M	M	M		M		M	2	4
M	M	M				M	4,826	3
M	M	M		M			30	3
M	M	M					82,485	2
M	M		M		M	M	9	4
M	M		M		M		94	3
M	M		M	M		M	2	4
M	M		M			M	1,950	3
M	M		M	M			17	3
M	M		M				105,863	2
M	M				M	M	428	3
M	M			M	M		3	3
M	M				M		4,152	2
M	M			M		M	333	3
M	M					M	2,745	2
M	M			M			10,093	2
M	M						3,102,317	1
M		M	M				1	2
M		M			M		1	2
M		M				M	41	2
M		M		M			3	2
M		M					5,222	1
M			M		M		4	2
M			M			M	54	2
M			M				6,893	1
M					M	M	12	2
M					M		1,988	1
M				M		M	5	2
M						M	321	1
M				M			821	1
3,330,890	3,315,524	92,786	115,018	11,309	6,736	10,749	-	-

기존 모집단 DB 자료와 개별 조사통계 결과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행정구역코드,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창설연월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16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3,315,524개 중 2,765,801개(누적 비율 83.4 %)를 연계 하였다.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전국사업체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차수	연계 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2,385,019	71.9
2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반	85,513	74.5
3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4자 중 3자, 전화번호 끝 4자리 ※ 조직형태가 개인/종사자 1인 사업체만 대상	전산	195,089	80.4
4차	사업체명, 행정구역, 산업분류(소),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8,423	80.7
5차	사업체고유번호, 대표자명, 산업분류(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36927	81.8
6차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 회사법인/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일반	14,766	82.2
7차	사업체명 5자 중 2자, 대표자명, 행정구역,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7,596	82.4
8차	사업체명 5자 중 2자, 대표자명, 행정구역, 산업분류, 전화번호 끝 4자리	일반	8,860	82.7
9차	조사원이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와 모집단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중 전출입코드 비이동(1)	일반	7,753	82.9
10차	종사자 5인 이상/매출액 50억 이상인 사업체 ※ 회사법인/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검색	2,827	83.0
11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	검색	1,813	83.1

12차	창설연월이 2007.3월 이전인 사업체 (2007년 기준에서 신규로 볼 수 없는 사업체) ※ 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검색	1,272	83.1
13차	사업체고유번호와 진출입코드 비이동(1)	일반	276	83.1
14차	조사원이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와 모집단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중 진출입코드 비이동(1), 사업체명, 산업분류코드	전산	5,018	83.3
15차	마 연계 사업체 중 종사자수 100인 이상/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체	검색	399	83.3
16차	마 연계 사업체 검색연계 (내용검토 결과)	검색	4,250	83.4
합 계			2,765,801	83.4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

변동코드	1(존속)	2(신규)	합계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수	2,739,580	26,221	2,765,801

< 「전국사업체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

변동코드	1(존속)	2(신규)	합계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수	233,105	316,618	549,723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광공업고유번호,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8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92,786개 중 88,899개(누적 비율 95.8%)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광업·제조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차수	연계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8,586	84.7
2차	사업체고유번호, 광공업고유번호	전산	4,773	89.8
3차	광공업고유번호	전산	2,222	92.2
4차	사업체고유번호	전산	529	92.8
5차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산	732	93.6
6차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1,206	94.9
7차	사업체명 4자리, 대표자명 3자리 중 2자리	일반	257	95.2
8차	검색연계	검색	594	95.8
합 계			88,899	95.8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연계 차수	00	11	12	13	14	15	27	28	합계
연계조건	(존속)	(전입)	(신규)	(재포함)	(10인 이상 이)	(대체 추가)	(9인 이하 이)	(소분류 변경)	
사업체수	82,256	3,047	62	453	701	1,903	451	26	88,899

〈「광업·제조업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연계 차수	00	11	12	13	14	15	27	28	합계
연계조건	(존속)	(전입)	(신규)	(재포함)	(10인 이상 이)	(대체 추가)	(9인 이하 이)	(소분류 변경)	
사업체수	3,214	91	226	294	10	1	51	-	3,88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행정구역코드, 산업분류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5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15,018개 중 114,838개(누적 비율 99.8%)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

연계 차수	연계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3,495	63.9
2차	사업체고유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30,940	90.8
3차	행정구역코드, 사업체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산업분류(소분류) ※ 개인/종사자 1인 사업체만 대상	전산	1,070	91.7
4차	사업체명 4자리 중 3자리, 행정구역코드(시도), 전화번호 끝 4자리	일반	5,802	96.8
5차	유고코드 제외한 비 연계 사업체	검색	3,531	99.8
합 계			114,838	99.8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

변동코드	10 (존속)	60 (산업분류수정)	11 (표본대체)	99 (불응)	합계
사업체수	101,755	334	12,025	724	114,838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

변동코드	10 (존속)	60 (산업분류수정)	11 (표본대체)	99 (불응)	합계
사업체수	50	3	2	125	1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3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1,309개 중 11,184개(누적 비율 98.9%)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차수	연계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029	62.2
2차	사업체고유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2,387	83.3
3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1,768	98.9
합 계			11,184	98.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연계 차수	10	00	11	13	19	99	합계
변동코드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순수추가)	(본청추가)	(불응)	
사업체수	9,544	577	985	-	17	61	11,18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연계 차수	10	00	11	13	19	99	합계
변동코드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순수추가)	(본청추가)	(불응)	
사업체수	112	4	-	1	7	1	125

「운수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 등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4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6,736개 중 5,206개(누적 비율 77.3%)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운수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차수	연계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1,190	17.7
2차	개인운송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2,220	50.6
3차	사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	전산	135	52.6
4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1,661	77.3
합 계			5,206	77.3

「운수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운수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

변동코드	00 (존속)	04 (신규·누락)	06 (기본사항변경)	08 (대체)	12 (산업분류변경)	합계
사업체수	4,079	805	14	307	1	5,206

< 「운수업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

변동코드	00 (존속)	04 (신규·누락)	06 (기본사항변경)	08 (대체)	12 (산업분류변경)	합계
사업체수	1,082	329	16	102	1	1,530

「기업 활동 조사」 자료는 기업체 모집단 고유번호를 연계조건으로 2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0,749개 중 10,468개(누적 비율 97.4%)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기업 활동 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

연계 차수	연계조건		연계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기업체 모집단	기업고유번호	전산	9,853
2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615	97.4
합 계				10,468	97.4

「기업 활동 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 활동 조사」 사업체고유번호연계결과 > 06

변동코드	00 (존속)	06 (본사이동)	합계
사업체수	10,316	152	10,468

〈「기업 활동실태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변동코드	00 (존속)	06 (본사이동)	합계
사업체수	262	19	281

향후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동향 조사」, 「서비스업 동향 조사」 등을 추가로 연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8년 기준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자료와 표본통계조사의 표본추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연계결과 중 미 연계 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점검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연계 자료의 과거 시계열 분석 및 보완 작업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이 연계된 결과 자료는 새로 조사된 개별 조사통계 결과의 내용검토로 활용되어 통계조사 간 동일 업체의 비교·분석을 통해 오류·누락된 항목을 수정보완하고 누락·중복된 업체를 방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4. 현 모집단 DB의 한계와 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통계청의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는 조사통계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점은 앞에서 설명한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 간의 포괄 범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또는 ‘기업체’의 개념적 정의에 알맞은 목표 모집단과 실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비교자료를 활용해 보완하여 구축하고 있는 현재 모집단 DB의 조사 모집단 간 차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한계는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조사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모집단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만을 위주로 모집단 DB를 갱신하게 되면 목표 모집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어느 특정 시기의 현실을 감안한 조사 모집단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이어 온 모집단 갱신은 기존 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통계영역을 확대 재생산할 여지가 많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산업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IT 등 첨단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 시기에는 물리적 장소가 사업 또는 조사통계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지금껏 통용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실제 산업 활동 중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온라인 산업과 별도 사업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외판, 금융/보험 설계, 강의, 컨설팅, 창작 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조사통계에서 배제된 새로운 산업 활동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통계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모집단 파악이 필요하다.

이제는 조사통계만으로는 종합적인 산업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한계에 도달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실 변화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통계 방식은 특성 상 조사항목, 조사대상,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파악자료도 모든 조사대상을 감안한 조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즉, 조사대상 규모에 따라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계된 조사표로 정보가 한정돼 유연성 있게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이 이슈화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 구축도 기존 조사 모집단과 별개로 행정자료 모집단 DB를 구축하여 향후 상호 보완·연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사업체 조사로부터 산업의 기본단위 모집단 개념을 정립하다보니 ‘사업체’를 중심으로 DB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나 선진국에서는 제도적 단위이자 법적 단위인 기업체(Legal Unit)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의 지리적 식별을 위한 기업의 부분이자 지역 단위로 쪼갠 사업체(Local Unit)란 개념을 쓰고 있다. 통계로 활용 가능한 산업 활동 관련 행정자료도 대부분 기업체 단위로 생산되고 있으며, 통계 이용자도 지역 간 비교 통계가 아닌 경우 사업체보다 기업체 단위에 익숙하리라 본다.

개념적으로는 기업체를 ① 1개 사업체인 기업체 ② 2개 이상 사업체(기업부분)로 이루어진 기업체 ③ 무 사업장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과 ②의 기업체 단위를 지역단위까지 나누어서 조사하기 위해 사업체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③의 기업은 현재의 조사 방식으로는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련 산업 활동을 얻을 수 있는 행정자료를 찾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urostat-OECD 매뉴얼과 사업 통계(Business Statistics) 등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등록 방식의 기업체 단위 생멸 통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경제센서스 등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지역단위까지 조건 사업체 단위 생멸 통계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만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체 모집단은 원론적인 개념에 정확히 맞는 집합이라기보다는 포괄범위를 회사법인으로만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체와 기업체 DB 관리는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원래 기업체와 사업체의 개념적인 정의는 모호해졌으며 기업체의 포괄범위는 매우 축소되었다.

기업체 종류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①, ②, ③의 형태라면 기업체단위 목표 모집단은 ① 형태는 사업체단위와 포괄범위가 같고, ② 형태는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체를 모두 합친 기업체가 하나의 단위가 돼 포괄범위가 줄어들고, ③ 형태는 새롭게 포괄범위를 넓혀야 한다. 한편, 조사 모집단은 ①, ②의 형태라면 목표 모집단에서 조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포괄범위가 되어야 하고 ③ 형태는 빼고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에서 ① 형태는 사업체 단위이자 기업체 단위이며, ② 형태일 때에만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체를 그냥 쓰면 사업체 단위고, 몽땅 합쳐 하나로 쓰면 기업체 단위가 되어야 개념적인 정의에 적합한데, 현 기업체 모집단 DB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하고 회사법인 기업체 조사로만 한정하다보니 개념적인 포괄범위와 다르게 축소하여 자료를 구축·사용하고 있다.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조사만을 위한 조사 모집단에서 목표 모집단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사 가능성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 활동이 포괄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산업 활동도 현행 사업체 모집단과 별개로 행정자료 모집단을 구축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업체 ⇔ 기업체 ⇔ 기업그룹 등 통계단위를 유연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를 생성한다. 셋째, 통계단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양·질을 차별화하고 검입하는 경우 가능한 업종별로 쪼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수집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또는 사업체 정보를 최대한 축적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체 또는 사업체 단위 생멸통계를 작성한다.

제3절 국세 자료 활용 방안

1. 국세자료 활용 개요

과학 진보와 경제 발전 등으로 사회와 산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정확한 통계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기존의 조사통계로 급변한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 자료의 통계 활용 방안 추진계획을 들 수 있다.

통계청과 국세청은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2004. 4. 부총리 지시)'와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제도화(2005. 2.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에 의거해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통계청 내에 설치하고 통계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추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업자등록 신고자료 등의 행정정보 이용관련 협의(2005. 5.), 통계청 직원 국세청 파견 협의(2005. 10.)를 하고 행정자료와 관련하여 통계청 직원을 국세청에 파견(2006. 1~12.)했다.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처분을 받아 감사원, 국세청, 통계청의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회의(2006. 11.)와 '국세청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협의(2007. 5.)'를 하고 '소득자료 협의(2007. 9.)' 등도 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자료제공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통계법 관련 조항의 신설 개정(2007. 10.)에 이어,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2009. 2)하였다.

국세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계청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국세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통계청 예규 제48호를 제정(2009. 1. 7.)한 후, 이르면 2009년 5월 중에 사업자등록 관련 신고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 자료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에 실제로 활용하기에 앞서, 지난 2006년 통계청의 국세청 파견 출장 수행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유한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을 찾고자 한다.

2.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자료 활용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등이 있다. 이 자료를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설명한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자료를 원본으로 놓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자료는 2006. 4. 6. 기준으로 전체 5,029,628건이며, 휴업·폐업 신고 자료는 2004~5년에 1,830,344건이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총 건수만 나타나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통계청 조사결과와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2004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1,650,855건이며 법인세 신고 자료가 248,055건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자료의 산업분류를 검토한 결과, 코드 부여가 4,776,649건(95%)이며, 과세와 관련 없는 공공행정 및 회원단체 업종에는 업종코드가 부여되지 않았다.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을 적용하니 3,122,389건(62%)이 코딩되었고 1,907,239건(38%)이 코딩되지 않았다.

항목을 검토한 결과 '종업원 수'는 별도의 신고서(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자료에서는 별도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4,486,024건, 89%)이 자료가 없었으며, '사업장 면적'이 없는 경우는 1,831,728건(36%)으로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개별 사업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이들 업종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통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자료에서 사업장 있는 업체는 3,197,900건(64%)으로 조사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의 3,240,981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자료를 근거로 업체의 등록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자료」의 연간 사업자 개업실적〉

개업연도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5년간
실적(건)	5,029,628	347,871	468,041	543,110	634,420	807,998	2,801,440
비율(%)	100.0	6.9	9.3	10.8	12.6	16.1	55.7

〈「사업자등록 자료」의 연간 사업자 등록실적〉

접수연도	전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
실적(건)	5,029,628	350,033	520,048	581,014	625,099	821,191	2,897,385
비율(%)	100.0	7.0	10.3	11.6	12.4	16.3	57.6

〈「사업자등록 자료」의 월간 사업자 등록실적〉

연월	월 평균	05. 10	05. 11	05. 12	06. 01	06. 02	06. 03
실적(건)	82,218	71,406	78,411	85,682	80,514	81,891	95,405

휴업·폐업 신고자료 2004~5년을 검토한 결과 휴업은 17,722건이며, 폐업은 1,812,622건으로 월평균 75,526건이 폐업하였다. 휴·폐업 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검토한 결과 일부가 등록번호의 중복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폐업 신고 이후 업종, 장소, 상호 등을 변경했지만 똑같은 사업자번호로 다시 개업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자료 간 연계작업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와의 연계는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구역,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조합하여 16가지 항목비교 조건을 사용했으며, 조건에 부합한 자료는 점수 1점을 주고 합산하여 연계 여부를 판단했다.

<연계 비교항목>

비교항목	사업자등록		전국사업체조사		비교	비 고
	필드명	자리수	필드명	자리수		
R 등록번호	SAUP_ID	10	REG_NUM	10	10	
H 행정구역	H_CODE	4	ZONE_C	7	4	시군구코드 비교
S 사업체명	SAUP_N	60	SAUP_N	40	8	상호명 4자 비교
D 대표자명	DAEP_N	60	DAEP_N	10	6	대표자명 3자 비교
T 전화번호	TEL_N	12	TEL_N	4	4	뒷번호 4자리 비교

<연계 항목비교 조건>

비 교 항 목	점수	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1	RR
- 등록번호와 행정구역	1	RH
- 등록번호와 사업체명	1	RS
- 등록번호와 대표자명	1	RD
- 등록번호와 전화번호	1	R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1	HS
- 행정구역과 대표자명	1	HD
- 행정구역과 전화번호	1	HT
-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1	SD
- 사업체명과 전화번호	1	ST
- 대표자명과 전화번호	1	D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대표자명	1	HSD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전화번호	1	HST
- 행정구역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1	HDT
-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1	SD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1	HSDT
합 계	16	

비교하는 자료가 200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2005년 3월 이후 사업자등록 자료를 뺀 항목비교 조건의 누적 점수별 집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 항목비교 조건의 누적 점수별 집계결과>

누적 점수	사업자등록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전체자료 (A)	2005. 3월 이후등록(B)	A-B	전체자료 (A)	2005년 폐업연계(B)	A-B
합계	5,029,628	908,834	4,120,794	3,240,981	253,571	2,987,410
00	743,434	198,648	544,786	144,012	19,184	124,828
01	951,000	246,116	704,884	344,265	59,701	284,564
02	644,363	170,648	473,715	312,691	58,794	253,897
03	390,395	98,539	291,856	252,753	40,792	211,961
04	254,717	69,342	185,375	162,025	26,093	135,932
05	197,578	48,705	148,873	154,848	19,701	135,147
06	223,361	36,836	186,525	195,543	13,888	181,655
07	297,022	16,537	280,485	327,316	6,200	321,116
08	378,175	12,239	365,936	442,608	4,555	438,053
09	244,223	4,415	239,808	246,005	1,935	244,070
10	173,598	2,316	171,282	183,200	725	182,475
11	115,818	3,561	112,257	125,703	1,965	123,738
12	38,408	221	38,187	36,596	6	36,590
13	79,826	274	79,552	58,177	7	58,170
14	38,154	62	38,092	34,936	4	34,932
15	12,945	35	12,910	11,716	4	11,712
16	246,611	340	246,271	208,587	17	208,570

사업자등록 자료에만 있는 업체 등록건수는 누적 점수가 00인 항목 비교조건 모두가 일치하지 않은 743,434건이며, 이들 중 2005년 3월 이후에 신청한 198,648건을 빼면 544,786건이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업종 확인, 조사통계 제외업종 확인 및 동일업종 미 연계 업체 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자료」에만 있는 상위 30개 업종〉

번호	업종 코드	업종명	자료 건수	비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00111	전체	544,786	100.0	512,262	32,524
2	701201	점포(자카 땅)	222,325	40.8	221,206	1,119
3	051102	유자망, 통발어업연승, 정차망	12,792	2.3	12,789	3
4	602301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 구역화물차(6톤 미만)	11,971	2.2	11,877	94
5	701202	점포(타인 땅)소규모점포	9,573	1.8	9,534	39
6	602201	일반/고급/콜택시	9,274	1.7	9,243	31
7	602307	용달차	9,207	1.7	9,202	5
8	672000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7,877	1.4	7,742	135
9	552101	한식점업	7,107	1.3	7,076	31
10	453000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6,581	1.2	6,471	110
11	701102	일반주택	6,037	1.1	6,001	36
12	602305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5,368	1.0	5,205	163
13	602302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 노선화물차(6톤 이상)	4,964	0.9	4,817	147
14	522071	종합식품센터	4,932	0.9	4,894	38
15	012101	낙농, 육우사육	4,708	0.9	4,623	85
16	522080	담배	3,708	0.7	3,700	8
17	451102	주택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 미만)	3,668	0.7	3,254	414
18	051104	안강망, 선망, 선인망, 채낚기, 참주기, 기타	3,111	0.6	3,108	3
19	523231	위의	2,851	0.5	2,817	34
20	451101	일반건축공사	2,783	0.5	1,992	791
21	452102	철골 및 철근공사, 비계공사 해체공사 등	2,625	0.5	1,178	1,447
22	525101	전자상거래업	2,605	0.5	2,549	56
23	749609	기타 도급	2,548	0.5	2,355	193
24	012201	양돈	2,532	0.5	2,439	93
25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402	0.4	1,594	808
26	52600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2,377	0.4	2,360	17
27	519113	기타무역업	2,308	0.4	1,819	488

27	701300	전대	2,267	0.4	2,246	21
28	452104	배관단방,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2,262	0.4	1,396	866
29	552109	기타음식점업(간이음식점), 편의방	2,238	0.4	2,153	85
30	701103	상가임대공동주택	1,977	0.4	1,966	11

< 「전국사업체조사」 제외업종 및 검토 결과 >

업종 코드	업종명	자료 건수	검토 결과
012101	낙농, 육우사육	4,708	개인 농업 조사대상 제외
012201	양돈	2,532	(가구형태로 운영)
020200	별목	118	개인 임업 조사대상 제외
020300	임업서비스	140	(가구형태로 운영)
051102	유자망, 통발어업, 연승, 정치망	12,792	개인 어업 조사대상 제외
052101	패류, 해조류	1,585	간판, 사무실 없는 어촌계 조사
052102	해면어류양식	1,003	제외
453000	건설기계토급 및 대여	6,581	사무실 없는 개인 건설장비 대여업자
512214	과실(법정도매시장)	207	
512215	채소(법정도매시장)	414	사무실 없는 개인 농수산물
512235	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27	경매업자
512236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118	
522098	우유	108	개인우유 배달업자
523132	화장품 외판소매	803	개인 화장품 외판업자
525101	전자상거래업	2,605	사무실 없는 전자상거래업
525910	자동차판매기운영	499	일정한 장소에 상주 종사자 없음
602201	일반택시, 고급택시, 콜택시	9,274	개인택시/화물/용달 약 30만
602301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구역화물차(6톤 미만)	11,971	같은 조사통계에서는 조합명부 로 조사
602307	용달차	9,207	· 사업자등록번호가 공백인 경우가 약 80% · 사업체명 상호연계 곤란
602303	범프트럭(12톤 미만)	347	사무실 없는 개인운수업
602305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5,368	(사업자)
672000	보험 및 연금 관련서비스	7,877	대리점 소속 개인 보험서비스업
701102	일반주택	6,037	사무실 없는 주택 점포 임대업자

701201	집포(자기땅)	222,325	
701202	집포(타인땅), 소규모집포	9,573	
940100	작가	125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303	사무실 없는 개인 작가, 화가,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인 등
940301	작곡가	42	
940302	배우 등	190	
940304	가수	12	
940901	바둑기사	11	개인 프로 바둑기사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378	개인강사(시간강사)
940904	직업운동가	230	개인 프로축구, 야구, 씨름 등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344	대리점 소속 개인 보험설계사

<「전국사업체조사」 제외업종 및 검토 결과> 표를 보면 대다수가 조사통계 제외대상이며, 약 50% 이상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와 사업자등록 자료 간에 상당히 미 연계된 동일업종의 사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통계조사 결과와 사업자등록자료 간 미 연계 동일업종 내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업종명	미연계	업종코드	업종명	미연계
15311	곡물 도정업	861	153102	곡물도정	233
22110	서적 출판업	14	221100	일반서적/ 교과서 출판	512
52211	곡물 소매업	844	522011	곡물	584
55112	여관업	667	551002	여관업	808
55211	한식점업	6,248	552101	한식점업	7,107
55212	중국 음식점업	439	552102	중국음식점업	334
55213	일본 음식점업	51	552103	일본음식점업	264
55214	서양 음식점업	196	552104	서양음식점업	487
55242	찻집	1,717	552303	다방(일반), 인삼찻집	778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9	702003	부동산관리업	279
70221	부동산 중개업	1,202	702001	부동산중개업	1,479
88394	당구장 운영업	658	924309	가타, 당구장	296

93111	이용업	1,845	930201	일반이용업	695
93112	미용업	3,034	930203	일반미용업	1,255
93121	욕탕업	149	930902	대중탕	232
93912	가정용 세탁업	2,810	930100	산업용/ 가정용 세탁물공급	496
합계		21,424	합계		15,839

앞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또는 유사업종끼리 상호 비교한 결과 연계되지 않은 자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결과와 2006년 국세청 파견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활용해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청과 협의해 2009년 5월 무렵 제공 예정인 개인 사업자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등록 관련자료 수록 항목> 수록 항목

자료명	수령 항목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5개 항목 <사업장 현황>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등 10개 항목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인적사항> 변경연월일,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항목 <정정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총괄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등 13개 항목
휴업·폐업 신고서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 등 8개 항목

이 자료 중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해 동일업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국세청 파견 당시 방식 또는 통계청 모집단 DB 구축 방식 등을 도용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해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해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한다면 기존 세부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사업자등록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과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제외 대상이면 별도로 관리하고, 조사 대상이라면 확인과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자료로 새로 추가시켜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 후 상호(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종 등 세부 항목의 변경현황을 수정하는 데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정정신고서 인적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삼아 정정신고서 자료를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보고 세부 항목을 수정한다면 관찰단위 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정정신고서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과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제외 대상이면 별도로 관리한 자료를 원본과 재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조사 대상이라면 확인과정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새로운 자료로 추가시켜야 하며, 조사제외 대상 자료의 재연계작업에서도 미연계자료는 별도로 자료의 추가작업을 하여 보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연계되지 않은 휴업·폐업 신고서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휴업·폐업 신고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하여 관찰단위의 갱신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휴업·폐업신고서의 상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해 조건을 달리 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휴업·폐업신고서를 활용해 갱신한다면 관찰단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현행 모집단 DB 자료와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 자료 간의 연계 방식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과제는 실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쓸 수 없는 여건에서 수행하는 선행연구이므로 대략적으로 연계방식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실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노하우를 종합하여 최상의 연계방식을 모색해 모집단 DB 구축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기초 연계방식〉

연계 차수	연계 조건	연계 방법
1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산
2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3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전산
4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월	전산
5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6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전산
7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연월	전산
8차	상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전산
9차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전산
10차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상호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1차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2차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상호/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3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4차	사업자등록번호의 조직형태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5차	사업자등록 자료의 개업연월 검토 (통계조사 이후 설립여부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6차	미 연계 자료 검색연계(내용검토 결과)	전산/수작업 병행

위 표의 연계방식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이 같다면 1차 동일업체로 보았으며, 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또는 이메일)/개업일 등은 고정시키고 상호/대표자명은 신고와 조사 간의 차이를 감안해 수작업 과정을 통해 내용 검토한 후 비교하는 연계 차수를 택하였다.

3.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자료 활용

국세청의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등이 있다. 이 자료를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설명한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자료를 원본으로 놓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계조건과 차수가 정해지면 연계여부에 따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한다.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에는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개인사업자용과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 전체와 비교·검토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단독기업 또는 본점이며, 다를 경우에는 지점으로 간주하고 검토한 결과 전체 537,421건 중 단독은 418,677건(77.9%)이며, 지점이 있는 본점은 27,258건(5.1%), 본점 산하의 지점은 91,486건(17.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업체명부작성에 활용되는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현황의 지점 여부 항목에서 지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서식되어 있음을 활용한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법인 성격별 구분 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으며 단지,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 성격별 검토 결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성격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항에 의거하므로 소득이 없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없으며, 신고대상 단위가 기업체 단위이므로 본점에서 산하 지점들을 모두 포함시켜 총괄 신고하고 지점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 자료를 사업체 단위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작업이 필요하고, 기업체 단위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과전 보고서의 법인세 신고자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 성격별 법인세 자료여부 내역>

구 분	전 체	법인성격별						
		영리 본점	영리 지점	비영리	규기	단체 총인	단체 기타	외국 법인
합 계	248,055	162,098	30,171	24,453	21,221	6,687	2,819	606
(비율)	(100.0)	(65.3)	(12.2)	(9.9)	(8.6)	(2.7)	(1.1)	(0.2)
있음(건)	167,400	159,574	0	6,978	0	261	162	425
비율(%)	(100.0)	(95.3)	(0.0)	(4.2)	(0.0)	(0.2)	(0.1)	(0.3)
없음(건)	80,655	2,524	30,171	17,475	21,221	6,426	2,657	181
비율(%)	(100.0)	(3.1)	(37.4)	(21.7)	(26.3)	(8.0)	(3.3)	(0.2)

국세청과 협의하여 2009년 5월 무렵 제공 예정인 법인 사업자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명	수록 항목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사업장(단체)소재지, 전화번호, 총괄사업장 소재지/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7개 항목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연도, 법인성격 등 4개 항목 <사업장 현황>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등 12개 항목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인적사항> 변경연월일,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5개 항목
정정신고서	<정정사항>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 장소소재지, 이메일주소,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주업종코드,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등 13개 항목
휴업·폐업 신고서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 등 8개 항목

이들 자료 중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해 동일업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법인명(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제공받은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해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한다면 기존 세부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용 자료를 조사 대상과 조사제의 대상으로 구분한 후, 조사 대상은 확인 작업을 통하여 중복을 제거하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새로 추가시켜야 하며, 조사제의 대상은 별도 관리를 통해 활용가능하리라 본다.

정정신고서 자료는 현행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 후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등 항목의 변경현황을 갱신하는 데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정정신고서의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삼아 정정신고서 자료를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보고 세부 항목을 갱신한다면 관찰단위 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정정신고서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조사제의 대상을 구분한 후, 조사 대상은 내용검토 등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조사 모집단 DB를 보완토록 해야 하며, 조사제외 대상은 별도 관리한 자료를 원본과 재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만약 재 연계에서도 일치되지 않는 미 연계자료는 별도 관리한 자료에 추가하여 보완하면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에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휴업·폐업신고서 자료는 개인사업자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기초 연계방식〉

연계 차수	연계 조건	연계 방법
1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산
2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산
3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4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전산
5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연월	전산
6차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7차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전산
8차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9차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전산
10차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법인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1차	법인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2차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법인/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3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명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4차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의 조직형태/법인종류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5차	사업자등록 자료의 개업연월 검토 통계조사 이후 철립여부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6차	미 연계 자료 검색연계(내용검토 결과)	전산/수작업 병행

위 표의 연계방식은 비교 대상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똑같고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사업개시연월 중 1가지라도 같다면 동일업체로 보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똑같다면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중 2가지가 같을 때 동일업체로 간주했으며, 신고 시점과 활용 시점과의 차이로 인한 대표자 변동과 법인명의 표기 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해 대표자명과 법인명을 활용 시점에서 수작업 과정을 통해 내용 검토한 후 비교하는 연계 차수를 택하였다.

4. 활용의 선결요건과 향후과제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사업체·기업체 조사 모집단을 구축할 때도 도움 되는 자료지만, 포괄범위가 더 넓은 목표 모집단을 구축할 때에 꼭 필요한 자료이다. 앞의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통계청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의 구성자료를 대상으로 비교·보완해야 하는 작업은 기존 DB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통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 각광받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방식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도 대표자, 소재지, 주 업종 및 상호가 바뀌었을 때 정정신고와 폐업 신고 등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는 휴면 자료의 존재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악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통계가 지닌 한계점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 생산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 구축사업은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조사통계의 모집단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사통계들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통계의 모집단에 대한 보완노력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실용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모집단 보완구축은 현행 조사 실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목표 모집단과 현실적인 조사 모집단의 괴리가 있는 어려

운 여건 속에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실무에서 많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충분한 여건을 갖춘 상황이라는 가정 아래 구현 가능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집단을 설계·모색하고, 관련 국제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활용을 위한 선결조건 및 향후 과제 등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적 모집단 설계는 현재 별도로 구축한 사업체와 기업체 모집단을 하나의 조사 모집단으로 구축하고, 이와 별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지만 행정자료를 활용해 관리할 수 있는 목표 모집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업체와 기업체 구분은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 조사만을 위해 편의적으로 나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개념적 차이는 규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위에 의한 차이로서, 사업체는 '장소' 단위, 기업체는 '제도(소유) 단위의 형태로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사업체 단위 조사통계가 중심이며, 사업체 단위가 생겨 난 이유도 조사를 지역단위까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통계 생산자 시각에서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업이 우선이고 지역단위나 기업부분 단위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 개념을 도입했을 뿐이다. 즉, 사업장 없는 기업, 사업체가 하나인 기업,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 등으로 지역별 산업 활동의 통계생산을 위해 구분한 개념적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조사통계에서 제외되고,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은 2개 이상의 소속 사업체 수만큼의 사업체 단위로 조사를 하거나 총괄해서 하나의 기업체 단위로 조사할 수 있어, 어느 단위로 조사할지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체가 하나인 기업은 사업체와 기업체가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조사통계 기초 단위인 '사업체'와 대비하여 '기업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차라리 통상적인 '기업'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나은 용어인 것 같다. '사업체'란 용어는 통계조사 목적으로 지역단위를 표시하거나 기업부분 단위를 표시하고자 생겨난 용어지만, '기업'이란 용어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일컬어 중소기업

이라 하고, 이와 대비하여 규모가 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체’란 용어보다 ‘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사업체’와 대비되는 개념은 엄밀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기업’이란 용어로도 불충분해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Daum) 국어사전에서는 기업을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다. 출자(出資) 형태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 합동 기업(公私合同企業)으로 나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통상적인 ‘기업’과 동일 자금에 의해 소유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단위를 뜻하는 ‘기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다. 즉, 기업이란 용어는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지자체단체조합 등도 포괄하고 있는 산업분류에 포함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표준산업분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지리적 식별장소 단위로 ‘사업체’라는 개념이 생겼으며, ‘사업체’와 대비되는 적합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체’란 용어를 차용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기업체’의 의미는 사업체로 구성된 제도(법) 단위 즉, 소속 사업체 모두를 합한 총괄을 뜻한다.

본래의 개념대로 한다면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제도(법)단위는 하나의 제도 단위로도 총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쉽게 구분 가능한 부문과 아직은 명확한 기준설정이 없어 구분이 쉽지 않은 부문이 있으므로 우선 법인 사업자등록 업체부터 ‘사업체’와 ‘기업’ 단위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해보고, 개인 사업자등록 업체는 실 자료를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을 찾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사업체와 기업체 모집단 DB를 사업체 모집단 DB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기업체 모집단 DB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된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체 모집단 DB에서 각각의 소속 사업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기업단위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현 ‘기업체’ 모집단의 경우는 조직형태, 종사자 수, 자본금 등 변수 조건식을 통해 기존 기업체보다 다양한 일부 ‘기업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체 모집단 DB가 원래 조사에 필요하다면 이와 달리, 향후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목표 모집단 DB’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조사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사업장 없는 점포 임대업, 개인 운수업, 우유 등 배달업, 화장품 등 외근 판매업, 사이버 유통, 보험/자산운영 등 컨설팅, 개인 창작, 개인 강사/게임/바둑 및 프로 운동선수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 자료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즉, 현 모집단인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조사 모집단 DB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구축하고, 조사제의 대상은 목표 모집단 DB에 관련 자료를 구축해 조사의 한계를 보완토록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앞 절에서 언급한 현행 모집단 DB 자료의 보완에 활용하면서 사업장 없는 자료 등을 목표 모집단 DB 구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코드 정보의 활용은 물론, 조사통계 결과와 세부항목의 비교·검토·보완 활용 등도 점차 확대되리라고 본다.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활용의 선결요건은 첫째, 국세청에서 실제로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이다. 제공받는 자료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항목)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제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받는 자료의 질이다. 제공받는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통계생산의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도 있고 조사통계를 대체할 정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국세자료를 통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쓸모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도 활용 방법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넷째, 모집단 구현 체계이다.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선택해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구현체계를 갖춰 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국세자료를 활용한 기존 사업체 모집단 보완은 선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 생산방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뿐, 한발 더 나아가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갈 치밀하고 차분한 계획과 준비·구현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일부 부서의 단편적인 노력보다 미래 통계생산을 개척하는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과제로는 첫 번째로 개념적 정의에 따른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개 이상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체는 현행 모집단 DB 자료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개 이상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체의 소속 사업체의 수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 더불어 고유번호(ID) 부여체계를 현재처럼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도 모색해야 한다. 실제 현 DB 자료와 활용 국세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실제 사용한 실무부서의견을 종합해 소관부서에서 고유번호 변경여부를 정하겠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시각에서는 현 통계청 사업체 고유번호(ID)와 유사하고 향후 기업의 생멸통계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 제안하는 고유번호 부여체계는 초기에 자료 검증에 대한 난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고유번호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세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한 번은 꼭 해야 할 절차이다. 또한 제대로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체계가 정착되면 내포정보 검증뿐 아니라 개체(ID)의 정보 변화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제안 고유번호(ID)는 다음과 같다.

창설연도(4) 창설지역(2) 사업체 일련번호(6) 검증번호(1)

창설연도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체가 언제 태어났고, 현재 몇 살인지 고유번호를 통해 알 수도 있고, 기본 자릿수를 줄여주기도 한다. 과거에 창설된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초기화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세청 등록 기업은 개인용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개업일 항목, 법인용 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항목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연월일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등을 참고해 정비해 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완작업으로 기타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한 사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정확한 창설 연도를 제대로 한 번 부여하면, 생멸통계작성, 연령별 분석 등에 유용한 고유코드가 됨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 사업체는 별도 창설연도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창설연도는 사업체 일련번호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어떻게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한꺼번에 부여할

수 있는지가 새 고유번호체계 실시여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국세자료의 개업일, 사업개시일 항목과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조사결과 항목과의 일치성과 정확도에 따라 창설연도의 고유번호 부여 여부는 결정되리라고 본다.

창설지역은 현 체계처럼 시도로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 통계청 사무소/지방청의 소관지역 코드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 수도 있고, 기본 자릿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정확한 창설지역 코드부여를 위해 과거 자료의 초기화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관할 세무서(3)와 법인등록번호 관할 등기관서(4) 그리고 조사결과 통해 정확한 창설 지역코드를 제대로 한 번 부여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용한 고유코드가 됨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 사업체는 별도 조사하지 않더라도 쉽게 코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설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아닌 모집단의 기본 정보에 사업체 이전 자료를 추적·관리해 사업체 이전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창설지역과 이전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일련번호는 처음에는 프랑스처럼 기업과 사업체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코자 했지만 다사업체 기업의 경우 기업 단위로 창설지역과 연도를 부여하다보면 소속 사업체 창설 지역/연도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기에는 자릿수 증가 및 관리차원에서 너무 복잡한 코드체계가 되어 현 사업체 모집단 고유번호처럼 사업체 단위로 부여코자 한다. 한편,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법인용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아닌 모집단의 기본 정보에 본점(사) 사업체 고유번호를 추적·관리하여 조건식을 통해 기업 단위의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일련번호는 2008년도 기준으로 과거에 창설된 사업체의 경우 ① 창설연도 ② 창설지역, 이 두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 때까지 생존한 사업체로만 우선 고유번호 부여 대상으로 정한다. 부연하면 가장 최근(2008년) 연도까지 생존하지 못한 사업체는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의 대상에서 우선 제외시키고 생존한 사업체에게만 우선 부여한다. 만약에 2008년 기준으로 영업 활동한 사업체가 330만개라면 우선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체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이들 생존하는 사업체를

① 창설연도별로 구분하고 ② 지역별로 구분한 후 창설연도별 지역별 사업체를 ③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순이나 ④ 법인/개인 구분 ⑤ 산업분류의 업종 순 등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창설연도, 창설지역 및 개업일 등으로 구분해 확실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체계는 오직 향후 조사 등 통계생산 및 이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과거 시계열 자료와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후순위 과거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작업이 필요하다. 즉 과거 연도별로 소멸한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를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기준으로 330만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연도/지역별 고유번호를 부여했고, 2007년 기준 50만 사업체가 소멸했다면 우선번호에 이어 연도/지역별의 추가번호를 부여하고 점차 과거로 확대한다.

검증번호는 사업체 고유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는 숫자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의 끝 숫자가 검증번호이다. 어떤 숫자 부여 규칙을 정해 일정한 숫자가 되도록 하며 만약 규칙에 어긋난 끝 숫자가 있는 경우 가짜라고 확인해 준다. 검증번호 부여방식은 다양하지만 간단한 주민등록번호 검증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한편, 고유번호에는 자릿수 제한 등으로 넣지 못하더라도 모집단의 필수 기본 정보로 포함할 항목으로는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2개 이상 사업체 이루어진 기업의 본사/지사 구분 및 동일기업 사업체 인지정보, 법인 사업자의 법인 종류와 조직형태, 주 산업분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일 기업집단(그룹) 인지정보 등을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고유번호 체계의 재정비, 초기화 작업과 지속적인 코드번호 부여 작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멸 통계 작성이다. 생멸통계를 작성하려면 세부 개념과 정의 등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 방향을 사업체 단위로 할 것인지, 기업 단위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사업체 단위를 목표로 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법인 기업단위부터 우선 시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대기기업의 퇴출, 합병,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 세부적 사업체 단위의 생멸 통계는 운영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

성도 적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멸통계 작성은 우선 법인 기업 단위로 시작하고, 제안한 고유번호 체계의 초기화 등 관련된 생멸항목자료의 질이 제고된 후에 사업체의 창설연도 및 생멸자료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사업체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세 번째는 목표 모집단 DB 구축이다. 현 조사통계에서 제외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자료에서 사업장 없는 사업자를 종합 관리하는 DB를 구축하는 사업과 이를 관련 통계생산에 활용하는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DB를 구축할 때에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존 모집단 DB와 연계할 수 있도록 ID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조사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이 따로 없는 사이버 영업활동과 사업장 없는 개인운수업, 개인 강사 등의 모집단 정비 및 통계생산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실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업종 등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항목 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모집단으로 작성하고 기본 정보를 구축한 후 어떻게 관련 업종의 통계를 생산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 새로운 방안을 시도해보고 한발 나아가 경제센서스를 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상세 항목을 통한 현행 모집단 DB 자료의 보완이다.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체의 소속 사업체 총괄 개수와 세부 내역을 법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신청서 인적사항 중 총괄사업장 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및 법인현황 중 법인 성격 지점여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종합하여 본점 사업체와 지점 사업체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세부 동일항목의 소속 사업체 모두를 합하면 기업체 단위 하나의 세부 동일항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연하면, 기업체의 소속 사업체 전체 개수를 확인하여 소속 사업체의 세부항목 자료 합계와 기업체 세부항목 자료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현황 중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등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서 총괄사업장 소재지, 공동사업자 명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속 사업체 유무여부를 판단하고, 2개 이상 사업체로 이

루어진 개인 기업이라면 소속 사업체를 묶어 검토·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등록번호의 조직형태, 업종 항목들,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 법인성격 항목들을 종합하여 모집단 DB 개별 자료의 조직형태와 업종 관련 자료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현행 사업체 모집단 개별 자료와 연계된 국세 개별 자료의 항목 간 비교·보완도 중요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개별 자료가 국세 개별 자료에 없는 무등록 업체인지 판별하여 국세자료에 없는 무등록 사업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국세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새로 추가된 조사대상 사업체가 얼마나 되며 이들을 추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다. 조사통계의 실무적인 시각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로부터 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 차원의 모집단 구축관련의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절 결 론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변화는 조사통계를 생산하는 관점에서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조사통계의 조사 모집단을 관련 국세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관련 국세자료가 생겨서 기존 조사의 모집단 규모와 조사결과 자료를 검증·평가 받는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국세자료 내용의 정확성은 아직 잘 모르지만 비교·검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사통계의 모집단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조사통계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조사통계에 대한 검증·평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국세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조사 여건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인 여건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조사통계 위주의 시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통계 생산의 시각으로 국세자료를 모집단 설계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관련 국세자료의 활용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증적 자료 검토 전의 선행과제 차원에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의 통계 모집단 활용으로 인한 통계생산의 새로운 여건 변화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자료는 크게 법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개인 사업자등록 자료 두 종류가 있다. 지금껏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적해 온 사업체 모집단 자료를 조만간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 자료로 보완하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국세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도출한 보완방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

첫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의 개별 자료를 국세청 등록 사업체인지 무등록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의 개별 자료가 등록 사업체인 경우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의 조직형태 코드가 개인 과세(01~79), 개인 면세(90~99), 종교단체(89), 기타 개인(80)은 개인 사업체이며, 무등록 사업체도 개인 사업체에 포함시킨다. 법인 사업체는 사업자의 조직형태 코드가 영리법인 본점(81/86), 영리법인 지점(85), 비영리법인(82), 국가·지자체·지자체단체조합(83), 외국법인(84)이다.

또한,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종류 코드로 자세한 법인 특성을 알 수 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11), 합명회사(12), 합자회사(13), 유한회사(14),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21), 재단법인(22) 등이 있고, 특수법인에는 학교법인(31), 사회복지법인(32), 의료법인(33), 회계법인(34), 특별법 은행(35), 농협(36), 축협(37), 수협(38), 산림조합중앙회(39), 중소기업협동조합(40), 신협(41), 농지개량조합(42), 노동조합(43), (새)마을금고(44), 의료보험조합(45), 법무법인(46), 상공회의소(47), 상호신용금고(48), 자동차운송사업조합(49), 공업협동조합(50), 외국법인 주식회사(81), 합명회사(82), 합자회사(83), 유안회사(84), 기타(85), 기타 미 분류법인(71)이 있다.

이 코드로 학교, 의료, 회계, 법무,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개별 업종 구분과 특별법 은행,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마을금고, 상공회의소 및 각종

조합 구분이 가능하고 현재 통계청의 기업체 개념인 상법에 의한 회사 및 외국법인 회사 구분도 할 수 있어 제대로 코드부여가 되었다면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자료가 등록 사업체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물리적 장소와 등록 사업체의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와 사업장 구분 항목으로 사업장 유무를 알 수 있고, 사업자 및 법인 번호 관할 세무서 및 관할 등기관서 코드로 사업시작 지역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장이 없는 등록 사업자인 경우 기존 사업체 모집단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국세 자료에만 존재하는 사업인지 밝혀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부서가 함께 증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IT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산업, 개인 교습/창작, 또는 개인 운송업 등 실증적인 국세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하기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비교·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항목과 사업자등록 개업일, 사업개시일 및 사업자등록 연월일을 참고하여 창설연도를 비교·보완할 수 있다. 창설연도는 생멸통계와 고유번호 코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사업종류를 비교·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주 사업 및 부 사업 항목과 사업자등록 주 업태, 주 종목, 주 업종 코드 및 부 업태, 부 종목, 부 업종 코드 항목을 비교·보완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의 사업 항목은 시작개시한 시점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참고용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종사자를 비교·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월평균 종사자 수와 사업자등록 종업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의 종업원 수는 사업시작시점이며, 종사자의 세부 구분이 안 되어 활용성이 적지만 대략적인 종사자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일곱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비교·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자본금과 사업자등록 자기자금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의 자기자금은 사업시작시점이므로 비교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활용 기회가 어느 정도 성사되었더라도 곧바로 실무에 반영하기 힘든 현장 여건과 지금껏 쌓아 온 시계열 자료의 유지·보완 등의 문제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기존 사업체 자료와 활용할 국세자료 간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무등록 사업체를 제외한 등록업체를 대부분 비교·검토할 수 있게 된다면 모집단의 기초를 국세자료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집단의 구분을 사업장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 무등록 개인 사업체, 무 사업장 법인/개인 사업자, 무등록 개인 사업자로 나뉘 조사하거나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 자료의 세부항목 등을 면밀히 내용 검토하여 세부 업종이나 조직형태별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실무 부서와 공동으로 어떤 업종은 조사하고 어떤 업종은 행정자료를 활용할지 그리고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병행해 나갈 업종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세 자료 활용이 모집단뿐만 아니라 통계생산 방식으로도 연결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에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통계청 (2007),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
 _____ (2008), 「사업체 모집단 현황 및 이용확대 개선계획」
 _____ (2008), 「2007년 기준 기업체 모집단 구축 결과」
 _____ (2008), 「2007 사업체모집단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 보고」
 _____ (2008), 「사업체 기업체 생멸 기준」 내부자료
 _____ (2008), 「사업체 (고유번호) 관련 검토 사항」 내부자료
 _____ (2006), 「행정자료 활용 외국사례집」
 통계개발원 (2006), 「국가통계제도의 발전」
 _____ (2008),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_____ (2008),

<부 록>

<부표 1-1> 연도별 사업체변동별 사업체수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3,016,173	3,650,230	4,553,746	5,538,865	6,150,830	6,760,975	7,514,418	8,109,742
존속	2,634,309	2,476,048	2,368,575	2,256,947	2,633,114	2,637,974	2,584,950	2,699,534
신규	369,234	643,941	820,731	955,310	606,708	605,331	687,197	588,718
대상								
이외	54		37,826	38,252	11,093	9,949	25,226	17,729
31		13		35,190	36,620	10,766	9,684	24,675
32			12		34,818	36,390	10,698	9,597
33				12		34,719	36,314	10,644
34					12		34,677	36,224
35						12		34,667
36							12	
37								12
폐업	12,576	523,437	801,192	954,354	612,081	615,268	712,891	575,592
41		6,791	518,647	778,118	929,416	602,055	607,089	704,826
42			6,763	513,947	769,368	925,746	599,092	605,059
43				6,735	510,876	766,712	924,859	597,694
44					6,724	509,337	766,031	924,322
45						6,716	508,982	765,457
46							6,716	508,282
47								6,710
주	년전 대상의		년전 대상의		년전 대상의			
	년전 폐업		년전 폐업		년전 폐업			
) 31(1), 32(2) 37(7)	
	41(1), 42(2) 47(7)	

〈부표 1-2〉 사업체모집단 DB 자료구조

일련 번호	필드 명	속성	길이	필드 내용
1	YEAR	문자	4	연도
2	SAUP_ID	문자	10	사업체고유번호
3	KIUP_ID	문자	7	기업체고유번호
4	SAUP_NM	문자	80	사업체명
5	DAEP_NM	문자	50	대표자 성명
6	SAUPRG_NU	문자	20	사업자등록번호
7	BOUPIN_NU	문자	13	법인등록번호
8	ZONE_CD	문자	7	행정구역코드
9	ADDR_G	문자	40	주소 읍면동
10	ADDR_L	문자	40	주소 리
11	ADDR_B	문자	40	주소 번지
12	ADDR_H	문자	45	주소 호
13	ADDR_T	문자	40	주소 통
14	ADDR_V	문자	40	주소 반
15	BUILD_N	문자	60	빌딩상가 명
16	BUILD_D	문자	60	빌딩상가 동
17	BUILD_L	문자	60	빌딩상가 층
18	BUILD_H	문자	60	빌딩상가 호
19	TEL_Z	문자	15	전화번호 지역
20	TEL_K	문자	4	전화번호 국
21	TEL_N	문자	15	전화번호
22	CHANG_Y	문자	4	창설 연도
23	CHANG_M	문자	2	창설 월
24	SAUP_R_CD	문자	2	모집단면동코드
25	JOSIC_CD	문자	2	조직형태코드
26	KUBUN_CDs	문자	2	사업체구분코드
27	SAUP_KIND	문자	80	사업내용
28	SAUP_PUM	문자	100	취급상품
29	SNB_CD	문자	6	신 산업분류
30	SNB_CD_O	문자	6	구 산업분류코드
31	EMP_AV_M	숫자	20	월평균종사자수
32	INCOM_Y	숫자	20	연간 총매출액
33	WRITER	문자	20	작성자
34	WDATE	날짜	14	작성일
35	SNB_DAE	문자	1	산업대분류코드
36	SAUP_R_EB	문자	2	기초통계 사업장변동
37	SEQNO	문자	10	기초통계 DB일련번호

38	SAUP_NM2	문자	80	전산 사업체명
39	LINK_EB	문자	2	전국사업체 연계
40	LINK_MM	문자	2	광업제조업 연계
41	LINK_DS	문자	2	도소매서비스업 연계
42	LINK_CS	문자	2	건설업연계
43	LINK_TR	문자	2	운수업 연계
44	LINK_JM	문자	2	전문과학기술업 연계
45	LINK_BI	문자	2	기업활동 연계
46	LINK_BK	문자	2	기업체모집단 연계

〈부표 1-3〉 기업체 모집단 자료구조 내역

일련 번호	필드 명	속성	길이	필드 내용
1	YEAR	문자	4	연도
2	KIUP_ID	문자	7	기업체고유번호
3	KIUP_NM	문자	80	기업체명
4	DAEP_NM	문자	40	대표자명
5	D_SEX_CD	문자	2	대표자 성별
6	BOUPIN_NU	문자	13	법인등록번호
7	SAUP_ID	문자	10	사업체고유번호
8	SAUPRG_NU	문자	10	사업자등록번호
9	ZONE_CD	문자	7	행정구역 코드
10	TEL_Z	문자	15	전화번호 지역
11	TEL_K	문자	4	전화번호 국
12	TEL_N	문자	4	전화번호 번호
13	HTTP	문자	100	홈페이지주소
14	ADDR_G	문자	50	주소읍면동
15	ADDR_L	문자	100	주소 리
16	ADDR_B	문자	40	주소 번지
17	ADDR_H	문자	10	주소 호
18	ADDR_T	문자	8	주소 통
19	ADDR_V	문자	8	주소 반
20	BUILD_N	문자	50	빌딩상가 명
21	BUILD_D	문자	40	빌딩상가 동
22	BUILD_L	문자	20	빌딩상가 층
23	BUILD_H	문자	20	빌딩상가 호
24	CHANG_Y	문자	4	창설 연도
25	CHANG_M	문자	2	창설 월
26	KYLSAN_M	문자	2	결산 월
27	JOSIC_CHG	문자	2	조직변동코드

28	JOSIC_CD	문자	2	조직형태코드
29	KIUPGUBUN	문자	1	사업체구분
30	CAPITAL	숫자	10	차본금
31	SUB_SAU_P_NU	숫자	5	산하사업체 수
32	SAUP_KIND	문자	80	사업내용
33	SAUP_PUM	문자	120	취급품목
34	SNB_CD	문자	5	신 산업분류코드
35	SNB_CD_O	문자	5	구 산업분류코드
36	GSN1_B	문자	3	기업 산업분류
37	EMP_TOTAL	숫자	10	총 종사자수
38	EMP_SA_TO	숫자	10	총 상용종사자수
39	EMP_SA_TO_F	숫자	10	총 상용종사자 여자
40	EMP_SA_TO_M	숫자	10	총 상용종사자 남자
41	EMP_IM_TO	숫자	10	총 임시종사자수
42	EMP_MO_TO	숫자	10	총 무급종사자수
43	EMP_TO	숫자	10	사업체별 총 종사자수
44	EMP_TO_F	숫자	10	사업체별 총 종사자수 여자
45	EMP_TO_M	숫자	10	사업체별 총 종사자수 남자
46	EMP_SA	숫자	10	사업체별 총 상용종사자수
47	EMP_SA_F	숫자	10	사업체별 총상용종사자 여자
48	EMP_SA_M	숫자	10	사업체별 총상용종사자 남자
49	EMP_IM_SA	숫자	10	사업체별 총 임시종사자수
50	EMP_MO_SA	숫자	10	사업체별 총 무급종사자수
51	INCOM	숫자	11	매출액
52	BIGO	문자	500	비고
53	SAUP_R_CD	문자	1	사업체변동코드
54	BIZJOSIC	문자	2	경영조직코드
55	KIUPGROUP_CD	문자	4	기업그룹코드
56	KIUP_NM2	문자	80	천산 기업체명
57	WRITER	문자	20	작성자
58	WDATE	문자	10	작성일
59	REPLER_NAME	문자	40	응답자
60	TEL_O	문자	50	전화번호
61	SEQNO	문자	10	DB일련번호
62	SEQNO_D	문자	10	사업체기초일련번호
63	APPLY_YN	문자	1	보고서기준
64	SAUP_GUBUN	숫자	10	차료보완 통계 구분
65	DEL_CD	문자	1	삭제여부
66	MB_CD	문자	1	「기업활동실태조사」 명부 적용여부